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4 - 014 - 197호 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: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4. 8. 28.

## 주 문

- 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가. 과 태 료 : 1,800,000원
  - 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  - 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차량 제조·판매와 관련한 홍보 등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「舊 개인정보 보호법」1)(이하 '舊 보호법')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, 피심인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(명)

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응모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침해신고가 접수('22.7.21.)됨에 따라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舊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('22.9.14.~'23.8.8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 2.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시승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'22. 9. 7.(자료제출일) 기준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<sup>1)</sup> 법률 제16930호, 2020. 2. 4. 일부개정, 2020. 8. 5. 시행

#### 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
	합 계		

#### 나.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실관계

피심인은 이벤트를 운영하면서 이벤트 참여를 위한 '(필수)</sup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', '(필수)이벤트 참여 약관 동의'와는 별개로 '(선택)</mark>광고성 정보 전송 및 마케팅 활용 동의'는 선택동의 사항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였으나,

이벤트 페이지 설정 과정에서의 오류\*로 인하여 '(선택)광고성 정보 전송 및 마케팅 활용 동의'에 동의하지 않고 응모하기 버튼을 누를 경우 "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."라는 문구가 나타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없이는 이벤트 응모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.

\* 웹 페이지 설정시, 1단계(항목별) 화면에서 선택동의 사항으로 설정했어도 2단계(종합) 화면에서 필수동의로 설정하면, 1단계에서 설정한 내용과 관계없이 필수동의 사항으로 구성됨

#### 3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#### 가.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

피심인이 이벤트를 운영하면서, 정보주체가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벤트에 응모할 수 없도록 한 사실이 있다.

###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3. 8. 8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3. 8. 24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가. 舊 보호법 제22조제4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."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22조제5항은 "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<sup>2)</sup>(이하 '舊 시행령') 제17조제3항은 "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 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가.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 [舊 보호법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]

피심인은 고객이 '광고성 정보 전송 및 마케팅 활용 동의'에 동의하는 경우,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내외국인 여부, 휴대전화번호, 통신사 정보, 주소, 방문 일정 및 관심 차종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,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벤트 응모를 거부하였다.

이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舊 보호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다.

<sup>2)</sup> 대통령령 제32813호, 2022. 7. 19. 일부개정, 2022. 10. 20. 시행

#### 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위반행위	법률	舊 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		
동의를 받는 방법	舊 보호법 §22⑤	-	•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행위		

#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제5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2호, 舊 시행령 제63조, 舊 시행령 [별표2] '과태료의 부과기준' 및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³)(이하 '과태료 부과기준'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※ '질서위반행위규제법' 제3조(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)제2항에 따라 '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 시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「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(개인정보위 지침, '23.9.15.시행)을 적용함

#### 가. 기준금액

舊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각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을 600만원으로 산정한다.

#### < 舊 시행령 [별표2] 2. 개별기준 >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기 2회 3회 <sup>0</sup>	
다. 법 제16조제3항 또는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2호	600	1,200	2,400

<sup>3)</sup> 개인정보보호위원회지침, 2023. 9. 15. 시행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## 1) 과태료의 가중

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는 '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3]의 가중기준(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조사방해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과태료 부과기준 제7조 및 [별표3]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舊 보호법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제5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 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는 '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개인정보처리자의업무 형태 및 규모, ▲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정도, ▲조사협조, 자진시정 등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9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과태료 부과기준 제6조 및 [별표2]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舊보호법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제5항 위반행위는 '위반행위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고사소한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', '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진술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', '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70%를 감경한다.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(동의를 받는 방법)제5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 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1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동의를 받는 방법 (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 인정보 수집에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 거부)	600만원	-	420만원	180만원
계				180만원

# Ⅴ. 결론

피심인의 舊 보호법 제22조제5항(동의를 받는 방법) 위반행위에 대해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 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2024년 8월 28일

위원장 고학수 (서명	)
-------------	---